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. 3. 24 선고 2021가단1370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수, 홍영은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/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6. 11. 20. 접수 제126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숙미

별지